

2019년도
심천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9. 2. 25. ~ 2. 28. (4일간)
- 대상기관 : 심천면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6. 5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3건
 - 행정상 조치 : 13건(주의 8건, 시정 5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 3,942,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수원시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교류
 - 우수시책 및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행정발전 및 우호증진 도모
 -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로 농산물 홍보 및 농가 수입 증대



주요 지적사항

| 연번 | 팀명 | 지 적 사 항 | 처분(안) | | |
|----|------|---------------------------------------|--------------|-----|---------------------|
| | | | 행정상 | 신분상 | 재정상 |
| 합계 | | 총 13건 (총무 6, 주민복지 1, 민원봉사 2, 산업 4) | 주의 8 시정 5 | | 회수 2건 3,942,000원 |
| 1 | 총무 |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 주의 | | |
| 2 | | ◦ 지출원 직무대리 미지정 및 지급명령 부적정 | 주의 | | |
| 3 | | ◦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 시정 | | |
| 4 | | ◦ 이장수당 지급일 부적정 | 주의 | | |
| 5 | | ◦ 물품 구입 계약 부적정 | 주의 | | |
| 6 |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시정 | | |
| 7 | 주민복지 | ◦ 장수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 | 회수 90,000원 |
| 8 | 민원봉사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 주의 | | |
| 9 | |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 시정 | | |
| 10 | 산업 | ◦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 주의 | | |
| 11 | | ◦ 소규모사업 공사감독 소홀 | 시정 | | 회수 3,852,000원 |
| 12 | | ◦ 옥외광고물등의 민원업무 지연 처리 | 주의 | | |
| 13 | | ◦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소홀 | 주의 | | |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현 황】

○ 당직근무 시 보안(세콤) 장치 개폐 지연 및 미실시 현황

| 구분 | 근무일자 | 개폐시간 | | 당직근무자 | | 비고 |
|----|-----------|----------|----------|-------|----|-----|
| | | 해제 | 세트 | 직급 | 성명 | |
| 1 | 2018.03.. | 09:02:43 | 18:14:11 | - | - | |
| 2 | 2018.05.. | 09:01:55 | 18:07:18 | - | - | |
| 3 | 2018.05.. | 07:39:57 | 미실시 | - | - | 초과자 |
| 4 | 2018.05.. | - | 미실시 | - | - | 초과자 |
| 5 | 2018.05.. | 08:49:58 | 미실시 | - | - | |
| 6 | 2018.09.. | 07:27:56 | 미실시 | - | - | 초과자 |
| 7 | 2018.11.. | 09:01:20 | 21:43:22 | - | - | |
| 8 | 2018.12.. | 09:02:05 | 18:08:27 | - | - | |

※ 2018.01.01.~ 현재. 보안(세콤)장치 표본 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심천면 ☆☆ ☆급 ◎◎◎은 총 8차례나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각하여 출근하거나 보안(세콤)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당직근무 및 청사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각하여 출근하거나 보안(세콤)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퇴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및 당직근무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원 직무대리 미지정 및 지급명령 부적정

【현 황】

○ 회계관계 공무원 현황('17. 7. 1. ~ 7. 19.)

| 회계직명 | 직 급 | 성 명 | 담당기간 | 비고 |
|-----------|-----|-----|-------------------------|----|
| 재무관 | - | - | 2016.07.01.~2017.12.31 | |
| 지출원 | - | - | 2016.01.01.~2017.06.30 | - |
| | - | - | 2017.07.20.~2018.12.31. | |
| 담당자(회계지출) | - | - | 2017.01.04.~2017.12.31. | |

【위법부당사항】

○ 2017.7. 적용규칙인 구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규칙 제1312호, 2017. 6. 15., 일부개정] 제2조에 따르면 심천면은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으로 제1관서에 해당하며 지출원은 부면장임. 제50조에 따라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지출원의 지급명령은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2017.7. 적용규칙인 구 영동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제1146호, 2007.11.26., 일부개정] 제3조(지정대리)는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 면장은 문서로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2017. 7. 1. ~ 7. 19.일 까지 지출원인 부면장이 공석인 상태임에도 문서로서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고 2017. 7. △.일과 2017. 7. △일에 2017년 ○○○○○○지급 외 ★★건 ◇◇◇◇◇원을 ◎◎팀장을 지출원으로 e-호조 지급명령 승인을 하여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원 부재시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지급명령 승인시에는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포인트 세입 미조치 현황

(단위: 원, '19.1.8.기준)

| 용도 | 카드번호 | 신용카드 회사 (은행) |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액 | | | 현금전환 일자 | 현금전환 금액 | 비 고 |
|-----------------|------|--------------------|---------------|---------|-------|------------|------------|-----|
| | | | 소계 | 기업포인트 | 특별포인트 | | | |
| 계 | | | 137,377 | 128,143 | 9,234 | | | |
| 일반결제 및 현금영수증 | - | 농협 | 137,377 | 128,143 | 3,049 | | | |
| | - | 농협 | | | 6,185 | - | - |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일반결제 및 현금영수증 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137,377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137,377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수당 지급일 부적정

【현 황】

○ 이장수당 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내역

| 연도 | 수당 | 지급일 | 연도 | 수당 | 지급일 | 연도 | 수당 | 지급일 |
|------|---------|---------|------|---------|---------|------|----------|----------|
| 2016 | 2월 이장수당 | 16.2.22 | 2017 | 7월 이장수당 | 17.7.21 | 2018 | 10월 이장수당 | 18.10.22 |
| | 3월 이장수당 | 16.3.21 | | | | | 11월 이장수당 | 18.11.28 |
| | 4월 이장수당 | 16.4.25 | | | | | 12월 이장수당 | 18.12.26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이장수당 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위 현황처럼 지급일을 경과하여 이장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장수당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지급을 경과하여 이장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 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물품 구입 계약 부적정

【현 황】

○ 물품 구입현황

(단위: 원)

| 예산과목 (2017년 추경2회) | | | | 지급일 | 지 급 명령 번호 | 적 요 | 채권자 | 지급액 | 지역개 발공채 |
|----------------------|--------------|----------|-----------|----------------|-----------------|----------|-----|-----------|------------|
| 세부 사업 | 통계목 | 부기명 | 예산액 | | | | | | |
| | | | | 계 | | | | 7,060,000 | |
| 청사관 리운영 | 자산및물 품취득비 | ~~~~~구입 | 1,800,000 | 2017-1 1-09 | 537 | ~~~~~구입 | - | 1,750,000 | |
| 청사관 리운영 | 자산및물 품취득비 | ~~~~~구입 | 510,000 | 2017-1 1-09 | 538 | ~~~~~구입 | - | 510,000 | |
| 청사관 리운영 | 자산및물 품취득비 | ~~~~~ 설치 | 1,270,000 | 2017-1 1-09 | 539 | ~~~~~ 설치 | - | 1,020,000 | |
| 청사관 리운영 | 자산및물 품취득비 | ~~~~~ 구입 | 4,200,000 | 2017-1 1-09 | 540 | ~~~~~ 구입 | - | 3,780,000 | 50,000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I 장/1./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5. 「분할계약의 금

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시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100를 공채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2017년 2회추경 예산에 편성한 ○○○○○구입 외 3건의 물품 구입에 대해 유사성·중복성을 고려하여 1건으로 일괄구매함이 효율적임에도 4건의 물품구입으로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서류를 요구하였고, 4건의 물품구입에 대해 일괄 구매시 9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 구입 1건에 대해 5만원만 공채매입을 하여 결과적으로 공채매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물품구입시 특별한 사유없이 나누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현황('18.12.31.)

| 현금명 | 관리 부서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 계㉡=㉢-㉣ | 증가액㉢ | 지출액㉣ | |
| 합 계 | | 581,090 | 1,396,421 | 2,933,291 | 1,536,870 | 1,977,511 |
| 보관금 | 소계 | 581,090 | 1,396,421 | 2,835,291 | 1,438,870 | 1,977,511 |
| | 건강보험료 | 0 | 1,191,200 | 1,191,200 | 0 | 1,191,200 |
| | 소득세 | 34,270 | -34,270 | 0 | 34,270 | 0 |
| | 기타보관금 | 0 | 0 | 857,780 | 857,780 | 0 |
| | 고용보험료 | 546,820 | -48,010 | 498,810 | 546,820 | 498,810 |
| | 산재보험료 | 0 | 287,501 | 287,501 | 0 | 287,501 |
| 잡종금 | 소계 | 0 | 0 | 98,000 | 98,000 | 0 |
| | 기타잡종금 | 0 | 0 | 98,000 | 98,000 | 0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구분 정리되며, 제7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고, 납입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에 따라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입금이 수납되면 수납된 일자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 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군금고에 입금의뢰를 통지하고, 군 귀속금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발생 증가액 2,933,291원중에 955,780원(기타보관금 857,780원, 기타잡종금 98,000원)만 반납처리하고 나머지 잔액 1,977,511원은 “반환대상 미확정 사유”로 e-호조에 등록되지 않고 미반환 상태로 세입세출외현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반환대상자에게 반환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9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수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장수수당 초과 지급 현황

| 구분 | 수 급 자 | | 사망일 또는 전출일 | 초과 지급 현황 | | 비 고 |
|----|-------|------|---------------|------------|--------|-----|
| | 성 명 | 생년월일 | | 지급기간(횟수) | 지 급 액 | |
| | 계(3명) | | | | 90,000 | |
| 1 | - | - | 18.. 사망 | 18.7.(1개월) | 30,000 | |
| 2 | - | - | 18.. 전출 | 18.7.(1개월) | 30,000 | |
| 3 | - | - | 18.. 사망 | 18.8.(1개월) | 30,000 |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의거 장수수당은 매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25일에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 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등의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심천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18.월.일 사망)외 2명에 대하여 제외사유(사망, 전출)가 발생한 이후 장수수당을 각각 3만원씩 총9만원을 부당지급 하였고, 감사일 현재(2019.02.27.)까지 환수조치하지 않고 있는 등 장수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제외사유 발생 이후 잘못 지급된 장수수당 9만원을 회수조치 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수당 지급시 제외사유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지급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붙임내역 참조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와 함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경찰관서에서 발급
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날인을 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
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
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에 종이문
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2016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 현
황에서와 같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특히,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하
면서 전자수입인지를 접수 후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지
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
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수리시 구비서류 확인과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 신고일 | 신고 사항 | 신청인 | | 차량번호 | 비고 |
|-------------|--------|-----|----|------|------------------------------------|
| | | 주소 | 성명 | | |
| 2016.03.28.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6.04.25. | 신고사항변경 | 심천면 | - | - | 인지세 미납 |
| 2016.05.27.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종이 수입인지 미 소인처리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6.06.08.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6.06.10.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사본첨부 |
| 2016.08.03.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6.10.26.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미기재 |
| 2016.09.22. | 신고사항변경 | 심천면 | - | - | 인지세 미납 |
| 2016.11.11.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6.11.24.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첨부 |
| 2017.01.04.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7.02.28.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미기재 |
| 2017.04.24.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누락 |
| 2017.05.26.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7.05.26.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7.05.26.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7.07.03.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누락 |
| 2017.09.29.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7.10.16.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7.11.23.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사본첨부 |
| 2018.03.12.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4.20.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04.02.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붙임]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 신고일 | 신고 사항 | 신청인 | | 차량번호 | 비고 |
|-------------|--------|-----|----|------|----------------------------------|
| | | 주소 | 성명 | | |
| 2018.04.24.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미기재 |
| 2018.04.24.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4.24.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5.01.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누락 |
| 2018.05.03.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미기재 |
| 2018.05.03.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5.14.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5.25.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6.08. | 신고사항변경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누락 |
| 2018.06.11.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6.11.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6.11.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6.11.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06.11.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06.11.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06.11.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07.02. | 신고사항변경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07.27.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09.27.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제작증 양수인 미기재 |
| 2018.10.30. | 사용폐지 | 심천면 | -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
| 2018.11.13. | 사용신고 | 심천면 | -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누락 |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현황

| 상속인 | 피상속인 | 주소 | 차량번호 | 사망일 | 상속일 | 지연기간 |
|-----|------|-----|------|-----------|-----------|------|
| ○○○ | △△△ | 심천면 | - | 2016.월.일. | 2017.월.일. | 103일 |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4항6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수리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에 대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현 황】

○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미제출 현황

| 공 사 명 | 사 업 량 | 도급액 (천원) | 도 급 자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일 (예정일) | 비고 |
|--------|--------------------------|-------------|-------|--------|--------|--------------|----|
| 계 | 6건 | | | | | | |
| ○○○○공사 | 폐기물 6.51ton | 19,350 | - | 18.06. | 18.06. | 18.07. | |
| △△△△공사 | 폐기물 23ton | 9,000 | - | 18.07. | 18.07. | 18.08. | |
| ☆☆☆☆공사 | 폐기물 12ton | 10,476 | - | 18.06. | 18.06. | 18.06. | |
| □□□□공사 | 폐기물 23ton | 10,422 | - | 18.04. | 18.04. | 18.05. | |
| ◎◎◎◎공사 | 폐기물 14ton | 9,738 | - | 18.04. | 18.04. | 18.05. | |
| ◇◇◇◇공사 | 페아스콘 6ton 페콘크리트 25ton | 12,834 | - | 18.04. | 18.04. | 18.05. | |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심천면에서는 「○○○○공사」 외 5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신고필증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준공신고서 접수시 건설폐기물신고필증의 첨부자료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자료제출이 없음에도 보완요청없이 준공처리 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852,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공사감독 소홀

【현 황】

| 공 사 명 | 사 업 량 | 도 급 자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일 | 도급액(천원) | | | 비고 |
|--------|---|-------|--------|--------|--------|---------|-------|-------|----|
| | | | | | | 당초 | 변경 | 정산 | |
| 계 | 5건 | | | | | | | 3,852 | |
| ○○○○공사 | 배수로 120m 맨홀 2조 스틸그레이팅 12조 | - | 17.11. | 17.11. | 17.12. | 7,552 | 7450 | 102 | |
| △△△△공사 | 다이크 66m 포장 66m | - | 18.04. | 18.04. | 18.05. | 7,391 | 5,741 | 1,650 | |
| ☆☆☆☆공사 | 배수로 116m 맨홀 7조 건널목 3개소 | - | 18.06. | 18.06. | 18.06. | 10,476 | 9,459 | 1,017 | |
| □□□□공사 | L형옹벽 18m 배수로 6m | - | 18.08. | 18.08. | 18.09. | 8,277 | 7,608 | 669 | |
| ◎◎◎◎공사 | 배수로 294m 맨홀 3조 스틸그레이팅 8조 수로관뚜껑 19조 | - | 18.11. | 18.11. | 18.12. | 9,738 | 9,324 | 414 | |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7. 11. .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 반영된 스틸그레이팅(500×1000) 1EA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102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2018. 04. .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 반영된 다이크 구조물 66m[H=0.8m]를 54m [L=44m(H=0.8m), L=10m(0.2~0.8m)]로 감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1,650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2018. 06. .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 반영된 맨홀(1000×1000, 스틸포함) 1EA 및 맨홀 스틸뚜껑(1100×1100) 1EA가 누락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여 1,017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2018. 08. .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 반영된 L형 옹벽에 높이가 2M 미만으로 시공 시 비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669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2018. 11. .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 반영된 맨홀 스틸뚜껑(700×700) 3EA가 누락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여 414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설계변경없이 준공처리 하여 「○○○○공사」 외 4건에 대해 과다지급한 3,852,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옥외광고물등의 민원업무 지연 처리

【현 황】

○ 옥외광고물등의 민원 지연처리 현황

| 민원명 | 신청인 | 접수일 | 처리기한 | 처리일 | 지연일수 |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 기간연장신고 | - | 2017.01.18. | 2017.01.23. | 2017.01.24. | 1일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 기간연장신고 | - | 2017.01.18. | 2017.01.23. | 2017.01.24. | 1일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 기간연장허가 | - | 2017.03.27. | 2017.04.03. | 2017.04.04. | 1일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 기간연장허가 | - | 2017.03.27. | 2017.04.03. | 2017.04.04. | 1일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 기간연장허가 | - | 2017.03.27. | 2017.04.03. | 2017.04.04. | 1일 |
| 옥외광고물등의허가 (신고)사항변경신고 | - | 2018.03.19. | 2018.03.21. | 2018.03.22. | 1일 |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신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옥외광고물등의 민원서류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하여 실무검토를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동시에 민원접수시스템에서도 처리기한 내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에서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문결재 및 새올행정시스템에서의 전자적 민원처리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와 시스템상 전자적 민원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소홀

【위법부당사항】

- 2016~2018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과수원에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특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명농업실천으로 품질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수원예농가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인한 재배 노동력 절감 및 영농생력화를 도모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보조 50% 자담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각 세부사업별 수요조사 참여 농가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적을 경우 자체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추진협의회(심의회)에 상정, 공개심의 등의 방법을 통해 농가 선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선정 시 최근년도 지원사업 혜택이 적은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친환경 품질인증(신고) 농가,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신청농가주 농외소득이 37백만원이상인

자, 최근 3년간 보조사업 포기자(단, 불가피한 포기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 외 21농가에 대하여 3회에서 6회까지 일부 농가에 편중하여 보조사업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대상자지원 제외대상 요건과 달리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하였던 ◇◇◇◇ 외 9명에 대하여 불가피한 포기사유가 분명하다고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자체평가기준, 우선순위, 공개심의를 통해 여러 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